

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3. 2. 28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4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
		거주자인 경우	내국법인인 경우
1. 해외직접 투자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	가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)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) 손실거래명세서 4)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	법 제91조제1항제1호 500만원	건별 1천만원
	나.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)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) 손실거래명세서 4)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	법 제91조제1항제2호 500만원	건별 1천만원
2. 해외부동산등명세서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	가.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)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서 2)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서 3)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(임	법 제91조제2항제1호	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 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

<p>대)명세</p> <p>4)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</p>		<p>소득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</p> <p>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</p>
<p>나.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 료를 제출한 경우</p> <p>1)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</p> <p>2)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</p> <p>3)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(임 대)명세</p> <p>4)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</p>	<p>법 제91조제 2항제2호</p>	<p>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</p> <p>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</p> <p>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</p> <p>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(1억원을 한도로 한다)</p>